

자회사 정규직 전환심사 시행 공고

2018.9.21

한국토지주택공사 『파견·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협의기구』에서 자회사 전환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협의 완료된 5개 직무(시설관리, 청소, 경비·안내, 취사, 상담 및 콜센터)에 대한 정규직 전환심사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한국토지주택공사 -

□ 전환기준 및 심사대상

- (전환기준) 정부 「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」(‘17.07.20)에 따라 상시·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
 - (심사대상) ‘17.7.20.기준 자회사 전환대상 5개 직무에 종사하는 파견·용역근로자 중 전환심사 대상자로 통보된 자
- * 인사관리처 6541(18828)호 「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심사 대상자 변경 통보(자회사 관련)」

직무	대상 인원
시설관리	188
청소	272
경비·안내	166
취사	165
상담 및 콜센터	431
합 계	1,222

□ 심사절차 및 추진일정

*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시 공사홈페이지(채용정보-정규직채용)에 별도 안내

구 분	추진일정	비 고
지원신청서 접수	'18.9.21(금) ~ 10.08(월)	• 접수마감 : '18.10.08(월), 18:00
면접전형(인성면접)	'18.10.20(토) ~ 10.21(일)	• 장소 : 각 면접단위별 장소(추후 안내)
합격자 발표	'18.10.25(목)	• 신원조사(경비 직무에 한함) • 신체검사(국·공립병원, 대학병원)
임용	'18.11.01(목)~	• 계약기간 종료시 순차적 임용

□ 지원신청서 접수

- 접수기간 : '18.09.21(금) 11:00 ~ '18.10.08(월) 18:00
- 접수방법 : 공사 홈페이지와 연계된 채용 전용사이트를 통하여 지원신청서 접수

□ 면접전형

- (심사대상) 전환심사 대상자 중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근로자 전원
 - * 수험표 출력 : '18.10.17(수) 15:00~, 공사홈페이지 연계 채용전용사이트
- (일시/장소) '18.10.20(토)~'18.10.21(일), 5개 광역권역별 장소
 - * 5개 광역권역별 장소 : 본사, 서울지역본부, 인천지역본부, 경기지역본부, 토지주택연구원
 - * 면접 관련 세부사항(시간,장소 등)은 공사홈페이지 및 사내 포털 게시판 공지
 - * 필수 잔류근무인원, 출산, 입원(질병·사고), 직계가족 喪事 및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한하여 면접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, 인사관리처 유선문의 후 지원신청서 특이사항 기재 및 증빙자료 제출시 별도심사 예정
(예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는 사후 처리하되, 당일 유선 협의)

□ 전환직원 선정기준

- 면접전형 100점 만점 중 **60점**(면접위원별 점수 산술평균)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선정

* 평가결과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(셋째자리 이하 절사)

□ 임용 및 임용불가 사유

- (임용) '18.10월말 용역계약 종료 근로자는 '18.11.1.자로 임용하고, 나머지 인력은 기존 계약종료 후 순차적으로 임용
- 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근무평가 결과 부적격 등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취소(직권면직)
- (임용결격사유) 범죄경력조회(경비 직무에 한함) 및 신체검사(전체 직무 공통)에서 결격 사유* 발견 시 임용취소

* 별첨 경비직무 임용 결격사유 참조

□ 전환직원 신분 및 처우

- (직급체계) 전환심사 대상직무별 기존 수행직무, 직급·직위,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급 및 직무등급 부여
- (보수) '19년부터 직무급 임금체계를 적용하며, 개별 근로자의 '18년 임금수준(법정수당 제외)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함

* 임용일 기준 해당 자회사 직제 및 인사 관련규정에 따름

* 임용일 기준 해당 자회사 보수 및 복리후생 관련규정에 따름

□ 기타사항

- 전환심사 대상자가 기한 내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, 정규직 전환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, 향후 별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
- * 면접전형일에 응시곤란 사유가 있더라도 지원신청은 기한내에 하고 사유가 인정될 경우 별도심사 일정 고지할 예정
- 전환심사 합격여부 통보 외의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음
-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인력운용 상 필요 등에 따라 타 지역 및 타 부서 배치 가능

□ 「경비업법」 제5조(임원)에 따른 결격사유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
- 경비업법(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는 제외)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□ 「경비업법」 제10조(경비지도사 및 경비원)에 따른 결격사유

- 만 18세미만인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- 「경비업법」 제10조제1항 제5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 날 또는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경비업법」 제10조제1항 제6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「경비업법」 제10조제1항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경비업법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□ 기타 결격사유

- 「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」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